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3299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김○○, 서○○
피고, 피항소인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단5006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40,529,100원, 농어촌특별세 2,026,455원, 지방교육세 4,052,910원의 경정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2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는 사업구조와 수익구조, 인적 구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원고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회사인 B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의 전제가 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 B는 2000년대 초반 국가에서 연구비 카드 제도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2004년부터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연구비카드 소지자들이 물품 판매처가 해당 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인지 확인한 후 가맹점에 해당하면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장소 및 방법을 제공하고,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으면 물품 판매처에 연락하여 가맹점 가입을 권유하고 해당 판매처가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이후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장소 및 방법을 제공한 뒤 신용카드사나 신용카드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업체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방식(PSYS, 이하 '피시스'라 한다)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2

(2) 그 후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일반 판매처의 전자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가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원고는 2018년부터 일반 판매처에게 전자결제대행사의 정보를 비교하여 적합한 회사를 추천하여 주고, 이를 통하여 일반 판매처가 전자결제대행사를 선택하면 그 가입절차를 도와준 뒤 일반 판매처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전자결제대행사로부터는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방식(PAY2PAY, 이하 '페이투페이'라 한다)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3) 위와 같은 영업 대상, 영업 방식의 차이에 따라 원고와 B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범위나 가입의 절차, 비용, 결제 한도 및 방식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구비카드 소지자와 물품 판매처의 중개와 결제 플랫폼 제공이라는 B의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일반 판매처의 전자결제대행사 가입 중개와 결제 플랫폼 제공이라는 서비스로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는 고객에게 인터넷 기반의 전자결제시스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내용이 서로 유사하며,[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도 두 업체의 업종은 모두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에 해당한다.

나) 아래와 같이 원고의 설립 당시 본점소재지는 ○○ ○○구 F, ○○층 G호이고, B의 본점소재지는 같은 건물 H호이며,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1. 6. 1. 이전까지 원고와 B는 동일 건물 내 호실만 달리한 상태에서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였다.

일자	원고	B
2018. 8. 2.	○○특별시 ○○구 F, ○○층 G호	○○특별시 ○○구 F, H호
2021. 3. 15.	○○특별시 ○○구 D, ○○층 E호	○○특별시 ○○구 D, ○○층 L호

1) 원고의 블로그에는 원고를 '과학기자재 전문 쇼핑몰'이라고 기재하였고, 원고가 2018. 8. 13. 설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운영 중인 결제 플랫폼이라고 소개하여 B와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2

2021. 6. 1.	○○특별시 ○○구 D, ○○층 E호	○○특별시 ○○구 F, M호

다) 원고의 설립 당시 원고와 B의 사내이사는 C로 동일하다. 그리고 원고와 B의 2019년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원고의 주주는 C와 그 자녀들로 이루어져 있어 B의 과점주주이자 사내이사인 C가 원고의 설립과 운영을 사실상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			B 주식회사		
주주명	지분(%)	비고	주주명	지분(%)	비고
I	40	C의 子	C	60	대표이사
J	40	C의 子	K	20	
C	20	대표이사	B(주)	20	

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는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연구비카드 소지자들에게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찾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B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기반으로 일반 판매처를 상대로 전자결재대행사를 연결해주는 원고를 설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는, B의 주력 사업인 피시스를 이용한 사업과 원고의 주력사업인 페이투페이 사업은 사업모델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서버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를 관리·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원고를 설립하여 페이투페이 사업을 개시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 별도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고용하는 등 새로운 인적·물적 투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페이투페이 사업개시는 창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2

다. 그러나 원고가 페이투페이 사업을 개시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개설 외에 별도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사업초기인 2018. 8.경에는 C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새로이 인력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2, 4에 따르더라도 사업개시 당시에는 대표자 외에 고용된 인원이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21. 3.경에는 8명, 2023. 9. 26.경에도 3명 정도만이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원고가 새로이 고용을 창출한 효과는 크지 않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사무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실질적으로 B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물적 투자는 B가 사업확장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설립으로 새로운 사업이 최초로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원고는, 원고의 설립 후 B의 매출처를 승계하지 않는 등 거래처가 B와 중복되지 않고, 양자 사이에 거래 현황이 없으며, 2021년 기준 원고의 매출액이 B의 수배에 달하는 사정을 원고의 창업 근거로 주장하기도 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의 사업은 고객에게 인터넷 기반의 전자결제시스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며, 위와 같은 결과는 B가 사업확장을 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사업이 B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1-12

재판장 판사 신○○

판사 정○○

판사 조○○